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19가단52172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신성호, 배은서

피 고 1. A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사형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변 론 종 결 2021. 1. 28.

판 결 선 고 2021. 3. 1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5,258,391원 및 그 중 154,546,410원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155,258,391원 및 그 중 154,546,410원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21. 1. 28.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C 대표인 피고 A과 사이에 2018. 12. 28. 보증원금153,000,000원, 보증기한 2019. 12. 27.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채무를 원고가 신용보증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9. 5. 9. 당좌거래정지로 부도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보증사고의 발생).

3) 이에 원고는 2019. 7.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 원리금 합계 154,546,41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711,981원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및 채무초과 상태

1) 피고 A은 2019. 5.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5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5. 22.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상황 및 가액 등

1) 한편, 피고 A은 2019. 2. 28.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1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조합에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또한 같은 날 위 대출 채무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E에 1순위 우선수익자를 D조합으로 하여 담보신탁하고 같은 날 위 E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은 2019. 5. 22. D조합에 위 1)항 기재 대출의 원리금과 중도상환 수수료합계 1,165,558,140원(이하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지급하여 D조합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신탁등기는 같은 날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A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9. 5.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41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F은행으로부터 1,18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0. 3. 26. 무렵 가액은 1,516,299,40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조합,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인

155,258,391원(대위변제금 154,546,410원 + 법적절차비용 711,981원,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이라 한다)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54,546,41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9. 9.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인 155,258,391원(대위변제금 154,546,410원 + 법적절차비용 711,981원)을 대위변제하거나 지출하여 피고 A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2019. 7. 22.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5. 17.에는 아직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19. 5. 9. 피고 A에게 당좌부도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 A에게 사해의사도 없었으며, 피고 회사도 선의였다고 다투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A은 C[이하 'C'이라 하고, 개인 업체이므로 C의 거래는 A(C)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로, A(C)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원사를 구입하여 G에 판매하고, G는 H으로부터 원단의 제조·가공을 수주받아 피고 회사에게 A(C)으로부터 구입한 원사를 공급하여 원단 제조·가공 업무를 하청한 다음 피고 회사로부터 가공된 원단을 납품받아 H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피고 A은 G의 피고 회사에 대한 원단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되고, A(C)이 H에 원사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의 융통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자 위 약속어음 채무 및 A(C)의 H에 대한 채무,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채무를 피고 회사가 대위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 A은 위 약속어음 채무와 H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였고 H과의 거래가 회복되어 사업이 계속될 수 있었는데,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의 소극재산을 감소시켜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고 H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A의 채무변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 및 그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 활동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 연장 내지 채권회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기존채무의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여부,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930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거래 관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C), G, 피고 회사 및 H 사이의 각 거래

- ① 피고 A은 원사 도 · 소매 업무를 하는 C의 대표로 H으로부터 원사를 매입하는거래를 하면서 2018. 4.경부터 2019. 2. 28.까지 H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 ② 또한 피고 A은 원단과 원사 도 · 소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하는 G의 대표자사내이사인데, A(C)은 G에 2018. 3.경부터 2018. 11.경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이후 2019. 6. 29., 2019. 7. 31. 2번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G는 H으로부터 원단의 제조 · 염색 · 가공을 수주받아 이를 피고 회사에게 하청하여 H에 납품하는거래를 하면서 2018. 3.경부터 2019. 7.경까지 H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③ 피고 회사는 섬유원단 임가공 · 제조 · 염색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8년 하반기부터 G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이를 제조, 염색 및 가공하여 납품하는 거래를 하면서 2018. 8.경부터 2019. 7. 31.까지 G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A의 약속어음 발행 및 배서 관계 등

① 피고 A은 피고 회사가 2019. 2. 11. G에 납품한 원단 대금 137,726,692원의지급을 위하여 G를 수취인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약속어음'이라 하고, 그 순서에 따라 '제1 내지 4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G는 그 각 발행일과 같은 날에 위 각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2019. 3. 11. 제1약속어음을 J 대표자인 K에게, 2019. 3. 5. 제2약속어음을 중소기업은행에게, 2019. 3. 28. 제3약속어음을 중소기업은행에게, 2019. 3. 7. 제4약속어음을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게 각 배서, 교부하였다.

[표]

순번	액면금	발행일	만기일	최종 피배서인
1	31,865,279원	2019. 3. 11.	2019. 5. 5.	K(J)
2	40,000,000원	2019. 3. 5.	2019. 6. 5.	중소기업은행
3	36,249,380원	2019. 3. 5.	2019. 6. 5.	중소기업은행
4	29,612,033원	2019. 3. 5.	2019. 6. 5.	L
합계	137,726,692원			

③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만기일에 모두 지급거절 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등 변제 주장 관련

① 피고 회사는 2019. 6. 3.부터 2019. 6. 7.까지 M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지인인 M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피고 회사는 2019. 6. 7. 피고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76,286,077원을 입금하였다(피고 회사는 이는 제2, 3 약속어음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 피고 회사는 2019. 6. 7.부터 2019. 6. 10.까지 2회에 걸쳐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612,033원을 송금하였다(피고 회사는 제4약속어음금 중 10,000,000원은 L에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위 돈은 L의 요청에 따라 그 거래처인 주식회사 N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④ 피고 회사는 2019. 6. 18.부터 2019. 6. 19.까지 2회에 걸쳐 J(K) 계좌로 합계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피고 회사는 이는 제1약속어음금에 기존 거래대금을 더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⑤ 피고 회사는 2019. 6. 4. H에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관해 같은날 피고 A으로부터 토지건물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입금표를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F은행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의뢰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2019. 5. 16.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1,428,026,800원이다(이하 'F은행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한편, 관련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8278호 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인 O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9. 5. 1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519,311,200원이다.

4)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A(C)은 H으로부터 구입한 원사를 G에 판매하고, G는 이를 피고 회사에게 제조, 가공하는 등의 하청을 주어 납품받은 원단을 H에 납품하는 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A(C)의 H에 대한 원사대금 채무, G의 피고 회사에 대한 원단대금 채무 등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인다. 또한 피고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9. 5. 17.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피고 회사는 피고 A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① 2019. 5.2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피고 A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1,165,558,140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고, ② 2019. 6. 7.경부터 2019. 6. 19.경까지 피고 회사가 G로부터 원단대금으로 받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채무 합계 137,726,692원을 변제하고, ③ 2019. 6. 4. A(C)의 H에 대한 200,000,000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1,503,284,832원(=1,165,558,140원 + 137,726,692원 +2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설령 피고 회사가 그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함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기초사실과 인정사실, 앞서 든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가액이 1,519,311,200원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파주시 P 대 588.5㎡(개별공시지가 기준 약 6억 5,000만 원), 위 토지 지상 3층 건물 및 파주시 Q 대 36㎡(개별공시지가 기준 약 680만 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 A은 같은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할 구상금채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4억 9,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 R조합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S은행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 D조합에 대한 1,165,558,140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었고, 위 P 토지 및 건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는 채권최고액 금액으로 주식회사 T 앞으로 합계 780,000,000원, H 앞으로 합계 600,000,000원, U 앞으로 100,000,000원, 주식회사 I 앞으로 360,000,000원, V 주식회사 앞으로 200,000,000원, W 주식회사 앞으로 1,0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각 채권최고액 합계 금액이 50억 원이 넘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의 액수는 채권최고액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피고 A이 발행한 94,244,000원의 약속어음이 2019. 4. 5., 315,523,000원의 약속어음이 2019. 4. 30. 각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그 직후 최종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 제1약속어음도 지급거절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나 부동산의 가액 등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책임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방법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채무, A(C)의 H에 대한 채무 및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이고, 그 사업 계속을 위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자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담보권 설정행위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행위는 이미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하여 위 각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것이어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③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해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G의 피고 회사에 대한원단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상당을 피고 회사가 변제하게 하였다면 그 금액 상당만큼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각 약속어음 채무 또는 원단 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된다. 이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피고 A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우선변제권이 있었던 D조합에 대한 채무를 제외해도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었던 점[F은행 감정평가액에 따르더라도 262,468,660원(= 1,428,026,800원 -1,165,558,140원)의 잔존가액이 있었다]을 고려하면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이다.

④ 피고 회사는 A(C)과 G, 피고 회사는 H과의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회사의 존망을 좌우할 중요한 거래 관계여서 H에 대한 A(C)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C)과 H과의 거래는 2019. 3.경부터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이후 다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없으며, 2019년 2기(2019. 7. 1.~2019. 12. 31.)A(C)의 다른 매입거래도 없다. 반면 G와 피고 회사는, H과의 거래는 A(C)이 H으로부터 원사를 매입하는 것이 중단된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고,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A(C)의 부도 후 G가 H이 아닌 W(주)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이를 피고 회사를 통해 제조, 가공하여 H에 납품하는 거래를 계속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피고회사는, 피고 회사의 매출처가 G만 있는 것이 아니고, G의 매출처도 H만 있는 것이 아니며, 2019년 기준 피고 회사의 매출 대비 G의 거래비중은 29%, G의 매출 대비 H의 거래비중은 63%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C)의 H에 대한 2억 원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서 H과 G, G와 피고 회사의

거래도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A(C)의 H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A(C)이나 A이 대표로 있는 G가 H과의 거래를 계속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방법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매매대금은 1,550,000,000원이었고, 그중 계약금 155,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1,395,000,000원은 2019. 5. 30. 지급하며,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서류 교부는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위 매매대금에 못 미치는 1,503,284,832원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당 1,165,558,140원이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 외에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기도 전인 2019. 5.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약정된 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통상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하는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체결이 불가피했다거나 그 경제적 목적 등이 정당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 회사와 피고 A 사이에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을 인식하고 통모하여 이루어졌을 여지도 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H에 대한 채무 변제등이 시급히 필요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 회사가 F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1,18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에서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었다)으로 이를 일부 먼저 변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 변제는 2019. 6. 4.에야 이루어졌다. ㉡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F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을 한 것이어서 F은행의 감정평가액이 1,428,026,800원임을 알았음에도 그보다 약 1억 2,000만 원 이상 상회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 피고 A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만기일이 2029. 2. 28.이어서 아직 변제기도 도래하지 않았고 그 이자도 한 달여만 연체된 상태에서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지급하면서 변제되었다. ㉣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을 변제했다는 것도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전부 증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이를 피고 회사가 전부 변제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피고 회사 또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피배서인에 대한 소구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다. 피고 회사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사업 계속이 피고 회사에게 중요하였던 점, 이 사건 각약속어음의 부도를 막지 못하면 피고 회사도 배서인으로 담보책임을 져야 하는 점, 피고 회사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F은행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로 실제로 받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회사는 피고 A와 거래 관계를 계속하여 오던 업체이고, 제1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피고 A으로부터 자금의 융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므로 피고 A의 자금 사정 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이 최종부도가 나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2019. 5. 9. 이후 약 8일 만에 이루어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매매계약이 정상적이라고 보기어려운 여러 사정이 확인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의 사업 계속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경위나 동기 등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③ 피고 회사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 책임이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 A뿐 아니라 피고 회사에게도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유인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 회사의 악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④ 피고 회사가 지급한 매매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F은행 감정평가액을 초과하기는 하나,

관련사건에서의 감정결과에 따른 가액에는 못 미치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 같은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및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피고 회사가 지급했다는 매매대금의 내역이나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로 실제로 받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D조합의 근저당권등기 및 D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등기가 변제로 말소되었고, 관련한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1,165,558,1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0. 3. 26. 무렵 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516,299,4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며, 위 부동산

가액에서 피고 A이 변제한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액 1,165,558,140원을 공제하면 350,741,260원이 남게되어, 위 공동담보가액보다 원고의 앞서 본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피보전채권액)이 더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인 “155,258,391원 및 그 중 154,546,410원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9. 9.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 28.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금원'이라 한다)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동민

별지